Subject: Re: 여성전범법정
Date: Wed, 20 Jan 1999 18:03:37 +0900
From: KIM Chang Rok <chrkim@hyowon.cc.pusan.ac.kr>
To: Sihyun Cho <shcho@cc.sungshin.ac.kr>

조시현교수님을 처음 뵈었는데,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그리고 술한잔 하지 못해 저로서도 아쉬웠습니다.

조교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홍교수, 조변호사와 함께 대략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 2000년 법정의 의의와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2. 기존의 분과와는 별개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3. 법률가들을 대폭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내용에 관해 제가 18일에 정대협의 양미강총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양총무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정대협으로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총무와는 또한 6월의 맥두걸 방한에 즈음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선 발표자에 관해서는 조교수님과 홍교수 그리고 내가 참여하고, 그외에 여성운동가 등이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가 등에 대한 교섭은 정대협측에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심포지움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맥두걸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국제법]이라는 개괄적인 발표를 하게 하고, 2000년 법정과 관련하여 조교수님과 홍교수와 제가, 기존의 선례라고 할 수 있는 뉘른베르크재판, 토오쿄오재판, 유고 및 르완다재판의 개요와 2000년 법정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는 발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교수님이 유고 및 르완다를, 제가 토오쿄오를, 홍교수가 뉘른베르크를 맡는 것이 어떨지요.(다음 모임 때 간략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좋겠지요)

심포지움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학술진흥재단에 경비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신청 주체가 필요한데, 그것은 반드시 학회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에 관해 김명기교수님으로부터 "국제법협회는 발표실적이 적어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교섭해 보아야 하는데 저로서 생각나는 단체는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법과 사회 측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교수님께서도 가능한 단체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위와같이 짧게나마 보고합니다.

그리고 조교수님께 간곡한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는 2000년 법정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나름으로 할 수 있는 한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제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할 것이며, 실무를 담당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 조교수님께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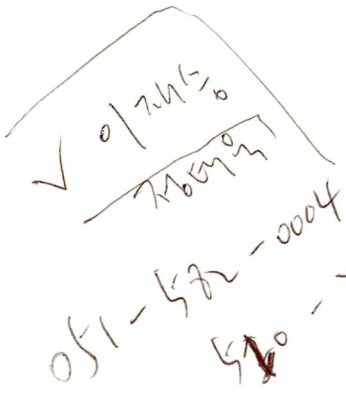
연락주십시오.